2023. 12.

2023년 자체감사 결과 공개자료
(김제노인종합복지관)

김 제 시
기 획 감 사 실

※ 본 감사결과 공개문은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제9조제1항제6호, 제7호 및 「김제시 자체감사 규칙」 제23조 등 관련 규정에 따라 비공개 대상 정보는 수정 또는 삭제하여 공개합니다.

○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제9조제1항제6호

- 성명·주민등록번호 등 개인에 관한 사항으로서 공개될 경우 사생활의 비밀 또는 자유를 침해할 우려가 있다고 인정되는 정보

○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제9조제1항제7호

- 법인·단체 또는 개인의 경영상·영업상 비밀에 관한 사항으로서 공개될 경우 법인 등의 정당한 이익을 현저히 해칠 우려가 있다고 인정되는 정보

처 분 요 구 목 록

김제노인종합복지관

□ 지적사항 총괄

(단위 : 건, 천원, 명)

합 계(지적)			시 정				주의	계선	권고	통보
총 건수	신분상 조 치	재정상 조 치	소계	회수	추징	기타				
6	-	2,762	3	-	1	2	2	-	-	1

□ 처분요구사항 일람표

(단위 : 건, 천원, 명)

연번	건 명	처분요구			비고
		처분 종류	신분상 조치인원	재정상 조치금액	
계	6건		0	2,762	
1	예수금 통장 관리 소홀	시정(추징)		67	
2	경로식당 운영 부적정	주의			
3	수의계약 회계 증빙서류 누락	시정(소화)		2,695	
4	강사 채용 시 노인학대 관련 범죄경력 미조회	시정(기타)			
5	사회복지시설 안전관리 업무 부적정	통보			
6	불용물품 폐기 절차 미준수	주의			

[일련번호: 1]

김 제 시

기관·부서명	김제노인종합복지관
제 목	예수금 통장 관리 소홀
행정상 조치	시정(추징)
재정상 조치	67,052원
내 용	

1. 관계 규정(판단 기준)

「김제시 노인복지타운 위수탁협약서」 제14조(재무·회계) ① 사업의 회계년도는 매년 1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로 한다. ② 재무·회계업무는「사회복지법인 및 사회복지시설 재무·회계규칙」등이 정하는 바에 따라 처리한다.

「김제시 노인복지타운 운영규정」 제35조(회계의 구분 등) ② 복지타운의 회계처리는 사회복지사업법 및 관계 법규에서 따로 정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사회복지법인 재무·회계규칙이 정하는 바를 따른다.

「사회복지법인 및 사회복지시설 재무·회계 규칙」 제3조(회계연도), 제5조(출납기한) 및「지방자치단체 회계관리에 관한 훈령」 제37조의2(계좌의 개설 관리)에 따르면 시설의 회계연도는 정부의 회계연도에 따르고 1회계연도에 속하는 시설의 세입·세출의 출납은 회계 연도가 끝나는 날까지 완결하여야 하고, 수입·지출은 원칙적으로 입·출금이 제한되는 공금예금계좌로 개설하여 운영하되, 사업운영 목적상 불가피한 경우 보통예금계좌를 개설하여 운영 할 수 있으며 개설된 계좌는 해당 목적대로만 운영 및 주기적으로 계좌 거래내역, 잔액 등 검사를 실시하여야한다.

예수금이란 매월 급여에서 공제되는 근로소득세, 4대보험료 등 직원들로부터 미리 받은 금액으로 원인이 해결되면 처리하는 부채에 속하는 임의계정이며, 예수금

관련 구체적인 지침은 없으나 지방재정법 및 지자체 재무회계규칙 등을 준용하여 처리하고, 예수금 계좌는 일종의 세입세출외현금 통장으로 회계투명성을 위하여 현금출납부와 결의서등 출납관계를 증명할 서류를 구비하여야 한다. 또한 예수금의 잔액은 자금원천이 보조금이면 국고나 지방자치단체에 반납조치 하여야 한다.
따라서 예수금을 관리할 때 급여대장에 있는 근로소득세나 4대 보험료 등을 향후 납부할 금액과 일치시켜야 하고, 보험료 등을 납부한 후에 공단에서 환급액이나 추가 납부금액이 발생되었을 때에는 추후 정산 절차를 통해 예수금을 관리하여야 한다. 따라서 다음 달 납부하거나 정산할 보험료 등을 제외하고는 예수금 잔액이 발생해서는 안되며, 예수금 통장을 관리하면서 발생된 이자수입은 잡수입처리 해야 한다.

2. 감사결과 확인된 문제

김제노인종합복지관은 4대 보험료, 소득세 집행 및 환급금 처리 등을 위한 예수금 통장을 개설·운영하면서 감사일 현재까지 이자수입이 2008년이후 세입처리 하지 않아 18,312원이 남아 있으며, 개인별 소득세 환급 또는 기관부담금 환급 등 원인을 파악하지 못하는 금액 48,740원의 잔액을 세입처리 또는 반환하지 않은 채 예수금 통장에 방치하였다.

조치할 사항 **김제노인종합복지관은**

앞으로 동일한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관련 규정을 준수하여 처리하도록 주의하기 바라며, 이자수입 18,312원은 즉시 반납하고 미정산 금액 48,740원은 잔액 발생 원인을 파악하여 처리하시기 바랍니다.**(시정-추징)**

[일련번호: 2]

김 제 시

기관·부서명	김제노인종합복지관
제 목	경로식당 운영 부적정
행정상 조치	주의
재정상 조치	없음
내 용	

1. 관계 규정(판단 기준)

「사회복지사업법」제23조 제4항, 제34조 제4항에 의하면 사회복지시설 및 법인 등은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사회복지법인 및 사회복지시설 재무·회계 규칙」에 따라 시설을 투명하게 운영하여야 하며,「보조금관리에 관한 법률」 제22조 제1항에서는 “보조사업자는 법령, 보조금 교부 결정의 내용 또는 법령에 따른 중앙관서의 장의 처분에 따라 선량한 관리자의 주의로 성실히 그 보조사업을 수행하여야 하며 그 보조금을 다른 용도에 사용하여서는 아니 된다.” 라고 규정하여 보조금의 용도외 사용을 금지하고 있다.

「사회복지법인 및 사회복지시설 재무·회계 규칙」제30조2에 따르면 계약에 관한 사항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이하 「지방계약법」이라 한다), 같은 법 시행령 및 같은 법 시행규칙을 준용한다고 되어있다.

「지방계약법」제9조(계약의 방법) 제1항에 따르면 계약을 체결하려는 경우에는 이를 공고하여 일반입찰에 부쳐야 함을 규정하고「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집행기준」제5장 수의계약 운영요령에 추정가격 5천만원 이하의 물품은 지정정보처리장치(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단체급식 식재료 전자조달시스템 등)로 수의계약 공고를 해야 하며, 공고 절차 없이 1인 견적에 의한 수의계약은 추정가격 2천만원 이하만 가능하다고 규정하고 있다.

다만, 지방계약법 시행령 제30조(수의계약대상자의 선정절차 등) 제2항에 따라 품질 확인 및 예산절감의 필요성이 큰 경우 5천만원 이하의 음식물(재료·공산품 구입 포함)의 구입 시 지정정보처리장치를 이용하지 않고 2인 이상으로부터 직접 견적서를 받아 계약할 수 있으며, 추정가격이 2천만원 초과 5천만원 이하인 계약으로써 개별법령에 따른 여성기업, 장애인기업, 사회적기업, 자활기업 등과는 입찰 없이 수의계약이 가능하다.

따라서, 연간 추정가격 2천만원 초과 5천만원 이하의 음식물, 농축수산물의 구매 등 품질을 우선적으로 고려해야하는 경우에는 지정정보처리장치를 이용하지 않고 2인 이상으로부터 직접 견적서를 받아 수의계약을 체결 하거나 지정정보처리장치를 통한 견적입찰로 식자재 납품업체를 선정 할 수 있고, 추정가격 5천만원을 초과하는 식자재 납품계약은 반드시 지정된 정보처리장치를 통하여 입찰 공고하여 납품업체를 선정하도록 하여야 한다.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 집행기준」 제1절 5호에는“계약담당자는 동일구조물 공사 또는 단일공사로서 설계서 등에 따라 전체 사업내용이 확정된 공사는 시행령 제77조 제1항에 따라 이를 시기적으로 분할하거나 공사량을 구조별·공종별로 분할하지 아니하고 일괄하여 계약을 체결해야 한다.”고 정하고 있고 용역·물품 계약에 대하여도 단일 사업을 부당하게 분할하거나 시기적으로 나누어 체결하지 않도록 해야한다고 되어 있다.

「집단급식소 급식안전관리 기준」제5조(위생점검 등)에 따라서 집단급식소를 설치·운영하는 자는 급식안전관리를 위하여 위생관리 점검표 및 식재료 검수일지를 작성하여야 한다.

「노인보건복지사업안내」Chapter 5-8 결식 우려 노인 무료급식 지원에 따르면 60세 이상 기초생활 노인 및 차상위계층 노인(독거노인 포함)에게는 무료로 제공해야 하며, **그 이상의 일정한 능력을 갖춘 노인의 경우에는 실비수준의 급식비 징수가 가능하며, 급식비로 징수한 수익금은 식재료비 등 급식의 질을 제고하기 위한 경비 이외의 타 경비로는 사용을 금지 한다고 명시하고 있다.**

2. 감사결과 확인된 문제

그럼에도 김제노인종합복지관은

① 2022년 식재료 구입 현황을 보면 집단급식소 운영을 위해 80,137,540원의 식자재를 구매하면서 계약절차 없이, 노인전문요양원과 같은 조리실 사용 및 영양사 부재 등을 이유로 노인전문요양원 식자재 계약을 근거로 식자재를 분할 구매하였으며, 구매한 식자재의 검수일지도 작성하지 않았다.

② 경로식당을 운영하면서 시설 종사자 등이 공동급식을 할 경우 무료급식 대상자에 상응하는 식대를 지불해야 하지만 월40,000원(1식 기준 2,000원)의 식비만 징수하고 있으며, 유료급식 대상자 및 직원의 경로식당 이용료를 식재료 구입 등에 사용하지 않았고, 2022년 결산 내역을 확인해보면 5,498,110원을 기관운영비 등으로 부적정하게 사용하였다.

조치할 사항 김제노인종합복지관은

앞으로 동일한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관련 규정을 준수하여 처리하도록 주의하기 바랍니다.**(주의)**

[일련번호: 3]

김 제 시

기관·부서명	김제노인종합복지관
제 목	수의계약 회계 증빙서류 누락
행정상 조치	시정(소화)
재정상 조치	2,695,000원
내 용	

1. 관계 규정(판단 기준)

「김제시노인복지타운 운영규정」 제35조(회계의 구분 등) ②복지타운의 회계처리는 사회복지사업법 및 관계 법규에서 따로 정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사회복지법인 재무·회계규칙이 정하는 바를 따른다.

「사회복지법인 및 사회복지시설 재무·회계 규칙」 제30조2에 따르면 계약에 관한 사항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이하 「지방계약법」이라 한다), 같은 법 시행령 및 같은 법 시행규칙을 준용한다고 되어있다.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14조에 따르면 계약담당자는 계약을 체결하려는 경우에 계약의 목적, 계약금액, 이행기간, 계약보증금, 위험부담, 지연배상금(遲延賠償金),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을 명백히 적은 계약서를 작성하여야 하지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에는 계약서의 작성을 생략할 수 있다. 같은 법 시행규칙 제48조에 따라 계약담당자는 영 제50조에 의해 계약서의 작성을 생략하는 경우에는 계약상대자로부터 청구서, 각서, 협정서, 승낙사항 등 계약 성립의 증거가 될 수 있는 서류를 제출받아 갖춰 두어야 한다.
그리고 같은 법 제6조의2에 따라 계약의 투명성과 공정성을 높이기 위하여 계약담당자는 입찰참가자 또는 수의계약의 계약상대자에게 청렴서약서를 제출하도록 하여야 하고, 청렴서약서에는 입찰, 낙찰, 계약의 체결 및 이행, 같은 법 제16조에 따른

감독, 제17조에 따른 검사와 관련된 직접 또는 간접적인 사례, 증여, 금품·향응 제공 금지에 관한 사항, 특정인의 낙찰을 위한 담합 등 입찰의 자유경쟁을 방해하는 행위나 불공정한 행위의 금지에 관한 사항, 그 밖에 계약의 투명성과 공정성을 높이기 위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을 포함하도록 하고 있다.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9조(계약의 방법) 제4항에서 계약담당자는 수의계약을 체결한 경우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수의계약 내용을 공개하여야 하고, 같은법 시행령 제31조(수의계약 내역의 공개) 및 제124조(계약정보의 공개)에서 계약담당자는 수의계약을 체결한 경우 계약정보를 계약이행 완료일로부터 5년 이상 홈페이지에 공개하여야한다.

「전라북도 지역개발기금 설치조례」 제6조제1항(채권의 매입)의 [별표1] 기준에 의하면, **①100만원 이상의 공사도급 및 용역계약의 경우 대금 청구액의 2.5/100, ②물품구매, 수리, 제조계약의 경우 대금청구액의 1.5/100의 채권을 소화하도록 되어 있고, 매입액 산출결과 1건당 5,000원 미만의 단수는 이를 절사하여 5,000원 단위로 계산해야 한다.**
같은 조례 제6조제4항과 관련된 [별표2]의 매입의무 면제대상은 ①일반운영비, 급량비, 업무추진비 비목의 예산 중 여신전문금융업법 제2조제3호의 신용카드로 대금을 지불하는 물품 구매, ②마을 공동재산을 조성하는 행위, ③법인 합병 시의 자동차·건설기계 이전등록 ④지방자치단체의 생활폐기물 수집·운반·처리대행업체의 용역계약 ⑤기타 도지사가 공익을 위하여 특별히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로 규정하고 있다.
인지세법 제1조(납세의무)에 따르면 국내에서 재산에 관한 권리 등의 창설·이전 또는 변경에 관한 계약서나 이를 증명하는 그 밖의 문서를 작성하는 자는 해당 문서를 작성할 때에 이 법에 따라 그 문서에 대한 인지세를 납부할 의무가 있으며, 제3조(과세문서 및 세액) 제1항에 따라 인지세를 납부하여야 한다.

2. 감사결과 확인된 문제

김제노인종합복지관은 총 2건의 유찰에 의한 수의계약 체결 과정에서 청렴계약이행 서약서 등 계약서류와 인지세(1건, 40,000원), 대금지급 시 지역개발공채

(2건, 2,655,000원)를 누락하였고, 계약완료 후에 수의계약 현황도 공개하지 않았다.

조치할 사항 **김제노인종합복지관은**

앞으로 동일한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관련 규정을 준수하여 처리하도록 주의하기 바라며, 미소화한 인지세 40,000원과 지역개발공채 2,655,000원을 즉시 소화하시기 바랍니다.**(시정-소화)**

[일련번호: 4]

김 제 시

기관·부서명	김제노인종합복지관
제 목	강사 채용 시 노인학대 관련 범죄경력 미조회
행정상 조치	시정(기타)
재정상 조치	없음
내 용	

1. 관계 규정(판단 기준)

「노인복지법」 제39조의17(노인관련기관의 취업제한 등) 제1항에는 노인학대관련범죄로 형 또는 치료감호를 선고받아 확정된 사람(이하 “노인학대관련범죄전력자”라 한다)은 그 확정된 때부터 형 또는 치료감호의 전부 또는 일부의 집행이 종료(종료된 것으로 보는 경우를 포함한다)되거나 집행을 받지 아니하기로 확정된 후 10년까지의 기간 동안 노인관련기관에 취업 또는 사실상 노무를 제공할 수 없다고 정하였으며, 또한, 「노인복지법」 제39조의17 제5항에 노인관련기관의 장은 그 기관에 취업 중이거나 사실상 노무를 제공 중인 사람 또는 취업하려하거나 사실상 노무를 제공하려는 사람에 대하여 노인학대관련범죄 전력을 확인하여야 하며, 이 경우 본인의 동의를 받아 관계 기관의 장에게 노인학대관련범죄 경력 조회를 요청하여야 한다.

2. 감사결과 확인된 문제

김제노인종합복지관은 사회교육프로그램을 위해 채용한 강사 18명의 노인관련기관 취업제한 여부 확인을 위하여 노인학대 관련 범죄 경력을 조회하고 계약을 하여야 하나 미조회한 채로 계약하였다.

조치할 사항 **김제노인종합복지관은**

앞으로 동일한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관련 규정을 준수하여 처리하도록 주의하기 바라며, 미조회한 강사 18명에 대하여 노인학대 관련 범죄 경력을 조회하시기 바랍니다.**(시정-기타)**

[일련번호: 5]

김 제 시

기관·부서명	김제노인종합복지관
제 목	사회복지시설 안전관리 업무 부적정
행정상 조치	통보
재정상 조치	없음
내 용	

1. 관계 규정(판단 기준)

「사회복지사업법」 제34조의4(시설의 안전점검 등)에 따르면 시설의 장은 시설에 대하여 정기 및 수시 안전점검을 실시하여야 하고 그 결과를 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또한 「사회복지사업법」 제18조의4(시설의 안전점검 등)에 따르면 시설의 장은 매반기 마다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하는 바에 따라 정기안전점검을 실시해야 한다.

「김제시 노인복지타운 운영조례」 제18조(시설안전점검 등) ① 제6조에 따라 복지타운을 위탁운영하는 경우 **수탁자는 그 시설의 안전점검을 상·하반기 1회를 정기적으로 실시하고 필요에 따라 수시로 실시**하여야 한다. ② 수탁자는 제1항에 따라 **정기 또는 수시로 안전점검을 한 후 그 결과를 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③ **시장은 제2항에 따른 결과를 제출받은 후 필요한 경우 시설의 운영자에게 시설의 보완 또는 개·보수를 요구**할 수 있으며, 이 경우 수탁자는 이에 따라야 한다. ④ **시장은 예산의 범위에서 제1항부터 제3항까지에 따른 안전점검, 시설의 보완 및 시설의 개·보수에 필요한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보조**할 수 있다.

2. 감사결과 확인된 문제

그럼에도 김제노인종합복지관은

① 2018~2019년 안전관리종합계획서를 작성하지 않고 위탁에 따른 개별적 시

설관리(소방, 전기, 승강기 등)를 추진하여 시설물의 종합적인 안전대책수립, 안전관리 매뉴얼, 중점관리사항 등의 관리가 소홀히 하였다.

② 2018~2023년의 시장에게 제출된 반기 보고(하절기·동절기)를 거의 “양호”로 보고하였으나 실제 점검 실시 여부를 확인할 수 있는 사진 등이 없고, 수립되어있는 안전관리종합계획서의 내용에 따라 안전관리책임관 및 담당자를 정하여 시설물을 책임감있게 관리하여야 하나 불명확하게 지정하여 관리한 사실이 있다.

조치할 사항 김제노인종합복지관은

앞으로 동일한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관련 규정을 준수하여 처리하기 바랍니다.**(통보)**

[일련번호: 6]

김 제 시

기관·부서명 김제노인종합복지관

제 목 불용물품 폐기 절차 미준수

행정상 조치 주의

재정상 조치 없음

내 용

1. 관계 규정(판단 기준)

「김제시 물품관리 조례」 **제16조(불용품의 소요조회와 불용결정)** ① 물품관리관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물품과 임산물·축산물 기타 생산물을 매각하는 때에는 규칙이 정하는 불용결정통보서에 의거 시장의 결재를 받아 불용결정을 하여야 하며, 활용가능품에 대하여는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에 소요조회를 하여야 한다. 1. 사용할 필요가 없게 된 물품으로서 앞으로도 사용할 전망이 없는 것 2. 예측할 수 있는 일정기간의 수요를 초과하여 재고로 보유하고 있는 물품 3. 원 장비가 사용불가능상태이거나, 원 장비가 없어지고 새로 취득할 가능성이 없는 경우의 그 부속품 4. 규격 또는 그 모형이 달라져 수리하여도 원래의 목적에 사용할 수 없는 물품 5. 시설물에서 제거된 물품으로서 활용할 수 없는 물품 6. 훼손 또는 마모되어 수리하여도 원래의 목적에 사용할 수 없는 물품 7. 수선을 요하는 물품으로서 수선함이 비경제적인 물품 8. 제1호 내지 제7호에 준하는 사유가 있다고 인정되는 물품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한 불용품의 소요조회 중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물품에 대하여는 소요조회를 생략할 수 있다. 1. 물품의 성질 상 긴급처분을 요하는 물품 2. 규격 또는 그 모양이 달라져 수리하여도 원래의 목적에 사용할 수 없는 물품 3. 훼손 또는 마모되어 수리하여도 원래의 목적에 사용할 수 없는 물품 4. 수선을 요하는 물품으로서 수선함이 비경제적인 물품 5. 기타 내구연수가 초과된 물품으로서 재활용이 비경제적인 물품 ③ 제1항의 규정에 의한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에 대한 불용품의 소요조회기준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동일 직할시·도

(시・군・자치구 포함)와 정부 각 부처・타 특별시・도에소요조회는 단위당 물품취득가격(장부가격 기준)이 10백만원 이상인 경우 2. 동일 직할시힝도(시・군・자치구 포함)에 소요조회는 단위당 물품취득가격(장부가격 기준)이 10백만원 미만인 경우 ④ 제1항의 규정에 의한 불용품의 소요조회는 조달청 인터넷홈페이지 및 자체인터넷홈페이지에 입력하는 것으로 제3항에 의한 소요조회를 갈음할 수 있다.

「김제시 물품관리 조례」**제17조(불용품의 매각) ① 제16조의 규정에 의하여 불용의 결정을 한 물품으로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불용품매각처분조서를 작성하고 이를 매각처분**하여야 한다. 1. 매각대금이 매각에 요하는 비용을 보상하고 남음이 없을 때 2. 매수인이 없을 때 3. 매각이 부적당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매각처분을 하였을 때에는 물품출납원은 계약의상대방으로부터 그 대금이 완납된 후 수령증을 받고 물품을 인도하여야 한다. ③ 물품계약담당공무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의 방법으로 매각가격을 결정하여야 한다. 1. 매각총량 2. 2 이상 물품의 총량 3. 동일 물품의 총량 4. 동일 품명・동일 규격 단위의 총량 ④ 불용품을 처분하는 때에는 시가를 참작하여 그 매각가격을 결정하여야 한다. 다만, 제3항 각 호의 규정에 따른 총량 중 매 물품당 장부 상 취득가격이단가 1천만원 이상인 물품으로서 재활용이 가능한 물품에 대하여는 감정평가업자의 감정평가액을 참작하여야 한다. ⑤ 제4항의 규정에 의한 감정평가업자가 감정을 할 수 없는 경우 또는 감정이 실익이 없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계약상대방 또는 제3자로부터 직접 조사한 견적가격 또는 거래실례가격에 의하여 결정한다. ⑥ 제1항의 불용품매각처분조서는 물품출납명령으로 본다. ⑦ 재무관은 물품매각의 경우에 있어서 매수인이 즉시 대금을 납부하고 그물품을 인수하였을 때에는 물품매각계약서 작성을 생략할 수 있다. ⑧ 불용품의 매각처분은 년 2회(4월・9월) 이상 실시한다. 다만, 필요하다고인정될 때에는 수시 매각처분할 수 있다.

「김제시 물품관리 조례」**제18조(불용품의 폐기) ① 제17조제1항 각 호에 해당하는 물품은 물품관리관이 규칙이 정하는 불용품폐기(해체)조서를 작성하고 이를 소각 또는 폐기하여야 한다.**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한 폐기처분은 지정하는 공무원의 입회 하에 하여야 한다. ③ 제1항의 불용품폐기조서는 물품출납명령으로 본다.

「김제시 정보보안업무 규정」제56조(저장매체 불용처리) ① 시장은 **정보시스템 또는 저장매체(하드디스크·반도체 기반 저장장치(SSD) 등)를 외부수리·교체·반납·양여·폐기·불용 처리하고자 할 경우 정보시스템 및 저장매체에 저장된 자료가 외부에 유출되지 않도록 자료 삭제 등 보안조치를 실시하여야 한다.** 또한, 제80조(디지털복합기 보안)③ 복합기 관리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복합기의 저장 매체에 저장된 자료를 완전 삭제하여야 한다. 1. 복합기 사용연한이 경과하여 폐기·양여할 경우**

2. 감사결과 확인된 문제

김제노인종합복지관은 감사대상 기간동안(2018.10.01. ~ 2023.07.31.) 총 223건의 물품을 불용처리 하면서 공문상 불용처리한다는 내용은 있으나 실제 불용처리 후 해당물품 처리내역은 존재하지 않으며, 불용결정 후 소요조회 및 매각결정 등의 절차를 준수하지 않았고, 저장매체 불용처리 시 자료 삭제 여부 등의 기록이 남아 있지 않아 관련 규정도 준수하지 않았다.

조치할 사항 **김제노인종합복지관은**

앞으로 동일한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관련 규정을 준수하여 처리하도록 주의하기 바랍니다.**(주의)**